#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서천호

김민석 · 김은혜 · 고동진

최수진 • 조정훈 • 인요한

김소희 · 정희용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 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 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법률 제 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2
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	
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b></b>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
	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
	<u>애인</u>
<u>&lt;신 설&gt;</u>	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
	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
	기 어려운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